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2. 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12. 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12.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가. 제안이유

○ 95년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던 생활개혁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초질서위반 등 10개 분야에 걸쳐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보상금 지급기준이 개별 관련조례, 규칙 등과 상이한 관계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나. 주요골자

○ 기초질서위반 10개 분야 중 개별 관련조례, 규칙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7개 분야 삭제(안 제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보상금이 2만원 이하이면 적지 않은지? 그리고 신고시민 보호장치는 되어 있습니까?</p>	<p>○ 신분이 보장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검토하겠습니다.</p>
<p>○ 신고건수가 너무 적지 않은지?</p>	<p>○ 95년 7건, 96년 1건, 2000년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p>
<p>○ 축대 봉괴신고 보상기준과 신고할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데?</p>	<p>○ 세부사항을 명시하면 민간과 마찰이 우려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당하면 지급합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불법광고물 등은 균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관련 제409호
의결년월일	2000. 12. 23 (제83회)

제출년월일 : 2000. 12.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95년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던 생활개혁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초질서위반 등 10개 분야에 걸쳐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보상금 지급기준이 개별 관례조례, 규칙 등과 상이한 과정으로 인해 미워박새 소지가 있음

주요골자

- 기초질서위반 10개 분야 중 개별 관리조례, 규칙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7개 분야 삭제(안 제2조)

부천시조례 제 9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생활개혁위원회사무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신고한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이하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타 기초질서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 따른다.

1. 불법, 부당요금 징수 행위자
 2. 불법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 행위자
 3. 출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요인 위험요소

부 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보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신고한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이하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단서신설)</p> <p><u>1. 쓰레기, 오·폐수배출 등 환경위해행위자</u></p> <p><u>2. 심야, 퇴폐·변태영업 행위자</u></p> <p><u>3. 건강위해식품 유통 행위자</u></p> <p><u>4. 불법출판물 취급행위자</u></p> <p><u>5. 불법 음란비디오물 판매 및 내여행위자</u></p> <p><u>6. 불법, 부당요금 징수 행위자</u></p> <p><u>7. 오물(담배꽃초, 휴지 등)투기, 음주소란, 방뇨 등 기초생활질서 위반자</u></p> <p><u>8. 불법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 행위자</u></p> <p><u>9.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요인 위험요소</u></p> <p><u>10. 학교앞 유해환경 행위자</u></p>	<p>제2조(보상금 지급)</p> <p>.....</p> <p>.....</p> <p>..... 다만, 기타 기초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 따른다.</p> <p><u>1. 불법, 부당요금 징수 행위자</u></p> <p><u>2. 불법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 행위자</u></p> <p><u>3.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요인 위험요소</u></p>